

전주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44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449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19가단2090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1. 9. 30.

판결 선고 2021. 11. 11.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19가단2090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지분에 관하여 2016. 7.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6. 7. 27. 접수 제125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진선

판사김진웅

판사곽지영

별지